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관 보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관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관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됨에 따라 의뢰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, 징수 실적이 미미한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(안 제4조)

- 1) 관보 게재의뢰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의무 명시
- 2) 관보 발행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생활 침해 내용 포함여부 점검 방법 명확화

나. 관보 게재료 폐지(안 제6조)

관보의 공익성과 미미한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게재건에 부과하는 관보 게재료 폐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관보규정 일부개정령안

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사항에는”을 “기관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포함되어 있는”을 “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점검소프트웨어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,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발견된”으로, “요청”을 “요구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하고,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.

제8조(종전의 제9조)제1항 중 “제8조제2항”을 “제7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8조제3항”을 “제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게재 의뢰) ① (생 략)	제4조(게재 의뢰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<u>사항에는</u> 개인의 사생 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기관은 「개인정보보호 법」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 칙을 준수하여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 -----.</u>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 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 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<u>포함되어 있는</u>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(補正)을 <u>요청</u> 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점검소프트웨어등 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, 개인 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 용이 발견된 --- 요구----</u>
제6조(관보 게재료)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<u>사항이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 보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 닌 경우에는 관보 게재료를 징 수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그 금액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	

<u>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</u> <u>제7조</u> · <u>제8조</u> (생략) <u>제9조</u>(관보 보급 등의 위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전자관보의 제공을 위하여 <u>제8조제2항</u>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의 유지·보수 등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종이관보의 보급을 위하여 <u>제8조제3항</u>에 따른 종이관보의 복제 및 보급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u>제10조</u> (생략)	<u>제6조</u> · <u>제7조</u>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 <u>제8조</u>(관보 보급 등의 위탁) ① - ----- ----- <u>제7조제2항</u>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<u>제7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 <u>제9조</u> (현행 제10조와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5 - 1491